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등록번호: 이름: 법무법인 이름: 거리 주소: 시: 주: 우편번호: 전화번호: 팩스번호: 이메일 주소: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(이름):	법원용 정보 제공 전용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
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, 소재 카운티: 거리 주소: 우편 주소: 시 및 우편번호: 지원 이름:	
신청인(각 신청인의 이름): 성인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, 이름 변경 및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	
사유소명명령—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정정발급	사건 번호: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

모든 이해관계인 귀하:

1. 신청인은(이름): 본 법원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 ☐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정정발급 ☐ 비공개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정정발급 명령을 요청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.
   a.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상의 신청인 성별 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(해당 사항에 표시):
      ☐ 신부
      ☐ 신랑
      ☐ 신부나 신랑 어느 쪽도 아님.
   b. ☐ 및 다음과 같이 이름 변경(변경 후 법적 성명):

2. 법원은 상기에 명시된 변경사항이 반영된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정정발급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, 신청된 변경이 사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포함한 서면 이의신청서를 본 명령 발령일로부터 6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합니다.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서면 이의신청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, 법원은 6주 기간 종료 후 심리 없이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을 인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.

3. 심리기일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고, 해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. 이름 변경이 해당 개인의 실제 성 정체성이나 출생 시 정해진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기된 이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(민사소송법 § 1277.5(b); 보건안전법 § 103430(h) 참조.)

날짜: _____

_____
사법관

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.

인쇄 저장 지우기